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④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문 2】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 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 ②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중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에 중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④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문 3】 다음 중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인
-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
-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④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⑤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문 4】 다음 중 현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 ① 성년 남자만이 종종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 관습이다.
- ②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이다.
- ③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이다.
- ④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 ⑤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문 5】 다음 중 주의의무의 정도가 가장 가벼운 것은?

- ①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의무
- ②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 ③ 영업상 무상으로 물건을 수리한 상인의 임치물 보관의무
- ④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 ⑤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대한 점유시 주의의무

【문 6】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 ②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척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값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④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 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 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7】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 ① 유치권 ② 질권 ③ 임차권 ④ 저당권 ⑤ 전세권

【문 8】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재산상속 ② 유증
- ③ 증여 ④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⑤ 유류분권

【문 9】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 ②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③ 변제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조건이 동일한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문10】 다음 중 제척기간이 아닌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② 취소권은 추진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④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11】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규정 중 강행규정(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것은?

-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규정
-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 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규정

【문12】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만이 인정될 뿐이다.
-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③ 민법 소정의 이율은 연 5%이고, 상법 소정의 이율은 연 6%이다.
- ④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 있다.

【문13】 다음 규정들 중 현행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① 대습상속
- ② 유언에 의한 입양
- ③ 상속분의 제3자에 대한 양도
- ④ 제사 주재자의 분묘 등의 승계
- ⑤ 공동상속인 중 부양자의 기여분

【문14】 다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 ②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 ③ 주금납입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회사에 대하여 한 상계
- ④ 양 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 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문15】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계약의 성립으로 발생한다.
- ③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 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16】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행위무능력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③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④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를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문17】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 ②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 ③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된다.
- ④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의 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증서의 교부전이라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인 채무자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건축업자가 잔대금지급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 ④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라도, 당사자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문19】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②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부부재산약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다.
- ④ 부부재산 약정상의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부부가 혼인 중에 한 재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도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토지는 부동산이다.
-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③ 동산 간에는 부합할 수 없다.
- ④ 중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문21】 갑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통설에 따름)

- ①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과의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된다.
- ④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갑에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2】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경우
- ②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 ⑤ 건축주가 직접 신축건물을 건축한 경우

【문23】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 ② 채무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서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독립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 ③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 ④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이행인수라고 한다.
- ⑤ 제3자가 계약관계에 가입하여 새로이 당사자가 되나,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와 더불어 함께 당사자의 지위에 머무르도록 하는 계약을 계약가입이라고 한다.

【문24】 다음 중 소급효가 없는 것만 모아놓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시효취득
- ② 무효행위의 추인, 혼인의 취소
- ③ 계약의 해제, 무효행위의 추인
- ④ 시효취득, 혼인의 취소
- ⑤ 인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문25】 다음 중 유류분의 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피상속인의 외손자 ② 피상속인의 삼촌
- ③ 피상속인의 아들 ④ 피상속인의 어머니
- ⑤ 피상속인의 남편

【문26】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점유는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③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④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한 때에는 그 타인은 간접점유자, 지시를 받는 자는 직접점유자가 된다.
- 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문27】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 ① 미성년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행위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 ③ 부담이 없는 유증에 대한 수락
- ④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무조건 해약
- ⑤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행위

【문28】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판례는 현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손해삼분설에 따르고 있다.
- ②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를 의미한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다.
-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29】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지만, 두 곳 이상일 수도 있다.
- ② 미성년자의 성장이 남보다 빨라서 외모 자체만으로는 성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실종선고에 대한 취소청구는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선고로 간주되는 사망일자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미성년자와 성년인 부모가 동승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신체의 발육이 미약한 미성년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전지(戰地)에 임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

【문30】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 ① 무권대리행위의 무효
- ②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의 허락의 취소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 ④ 등기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문31】 경계가 인정된 경우에 관한 소유권자 간의 이해 조절에 관한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 ①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③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경계표와 담의 설치비용 및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문32】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신탁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신탁법이라고 약칭함)로 인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 ② 신탁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신탁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신탁등기하도록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 ③ 다만 위 ②의 경우에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는 신탁등기의무가 면제된다.
- ④ 또한 위 ②의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신탁등기의무가 면제된다.
- ⑤ 또한 위 ②의 경우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인 신탁법시행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탁등기의무가 면제된다.

【문3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다.
- ④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34】 친족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 ② 친족회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1인을 두게 되며, 대표자는 친족회원 중에서 연장자가 맡는다.
- ③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 ⑤ 후견인으로서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문3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의사표시의 착오와 같이 취급된다.
-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④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 이후로는 그 법률행위가 실효된 것으로 취급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의 소급효는 없다.
- ⑤ 표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문36】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 공유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문3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공동피고로 될 수 없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언제나 가능하다.
- ④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가장매매는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문38】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 건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판례에 의한다)

-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므로, 신축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었으며 지하 1층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으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 ② 민법상 토지에 고정된 발전기로부터 생산된 전기도 동산이다.
- ③ 민법상의 물건이란 유체물과 전기 그리고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 ④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부속시킨 주유기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토지의 사용대가인 임대료는 물론, 자전거를 사용하며 지급하는 사용료도 법정과실이다.

【문39】 A가 2006. 1. 1.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 그 부인 B와 큰아들 C, 그리고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아내 E와 딸 F가 있었는데 F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이다. 그 상속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B는 A의 부인이므로 큰 아들 C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 가산되지만,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부인이나 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D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산되는 상속분은 없다.
- ② C의 상속분과 D의 원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며, E와 F의 대습상속분은 모두 합하여 D의 원래 상속분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 ③ D의 상속분에 대하여 E와 F가 대습상속을 함에 있어서 상속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1.5 : 1이 된다.
- ④ F의 혼인 여부는 F의 대습상속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
- ⑤ 위 상속재산은 B 내지 F의 공유로 된다.

【문40】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온 경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은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③ 종교에 관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④ 사단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에 대표자인 회장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